

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46회 사규심의위원회			
2022년 11월 23일 의 구	제 제 분	제46회 - 1호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(안) 의결사항	
			원안의결

제안부서 감사실

제안사유 「이해충돌방지법」 시행 및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 개정됨에 따라 유사·중복된 조항을 삭제 및 일원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주 문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주문과 같음.

제46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2년 11월 23일

위 원 장	이 기 완	
부위원장	차 태 교	
위 원	김 옥 선	
위 원	박 지 은	
위 원	이 경 택	
위 원	정 승 규	
위 원	최 두 일	
위 원	유 호 연	
위 원	정 훈 택	

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46회 사규심의위원회

2022년 11월 23일 의 제	제46회 - 2호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(안)	
구 분	의결사항	원안의결

제안부서 감사실

제안사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규정 내 반영하고자 함.

주 문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
의결한다.

의결사항 주문과 같음.

제46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2년 11월 23일

위 원 장	이 기 완	
부위원장	차 태 교	
위 원	김 옥 선	
위 원	박 지 은	
위 원	이 경 택	
위 원	정 승 규	
위 원	최 두 일	
위 원	유 호 연	
위 원	정 훈 택	

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46회 사규심의위원회

2022년 11월 23일 의 구	제46회 - 3호 부패행위신고 접수·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개정(안)
분	의결사항 원안의결

제안부서 감사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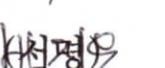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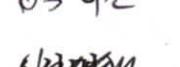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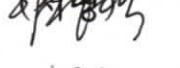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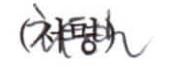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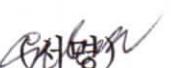
제안사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「공익신고자 보호법령」 개정사항을 규정 내 반영하고자 함.

주 문 부패행위신고 접수·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내규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주문과 같음.

제46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2년 11월 23일

위 원 장	이 기 완	
부위원장	차 태 교	
위 원	김 옥 선	
위 원	박 지 은	
위 원	이 경 택	
위 원	정 승 규	
위 원	최 두 일	
위 원	유 호 연	
위 원	정 훈 택	

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46회 사규심의위원회

2022년 11월 23일 의 제	제46회 - 4호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개정(안)
구 분	의결사항 원안의결

제안부서 인재개발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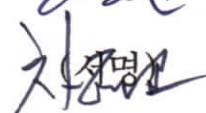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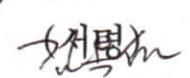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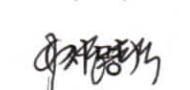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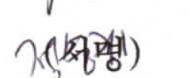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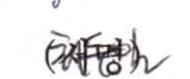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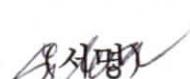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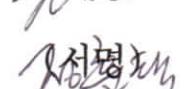
제안사유 「양성평등기본법」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규정 내 반영하고자 함.

주 문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주문과 같음.

제46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2년 11월 23일

위 원 장	이 기 완	
부위원장	차 태 교	
위 원	김 옥 선	
위 원	박 지 은	
위 원	이 경 택	
위 원	정 승 규	
위 원	최 두 일	
위 원	유 호 연	
위 원	정 훈 택	

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46회 사규심의위원회

2022년 11월 23일 의 구	제 제 분	제46회 - 5호 피복지급규정 개정(안) 의결사항	보류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제안부서 인사노무부

제안사유 피복 지급 및 피복 관리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주 문 피복지급규정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보류.

제46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2년 11월 23일

위 원 장	이 기 완	
부위원장	차 태 교	
위 원	김 옥 선	
위 원	박 지 은	
위 원	이 경 택	(서명)
위 원	정 승 규	
위 원	최 두 일	
위 원	유 호 연	
위 원	정 훈 택	

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

제46회 사규심의위원회

2022년 11월 23일 의 구	제46회 - 6호 사규관리규정 개정(안)	의결사항	수정의결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

제안부서 법무실

제안사유 이사회의결을 통해 확정하는 사규 목록 및 업무 절차 등을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주 문 사규관리규정 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의결사항 수정의결.

제46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.

2022년 11월 23일

위 원 장 이 기 완

부위원장 차 태 교

위 원 김 옥 선 (서명)

위 원 박 지 은 (서명)

위 원 이 경 택 (서명)

위 원 정 승 규 (서명)

위 원 최 두 일 (서명)

위 원 유 호 연 (서명)

위 원 정 훈 택 (서명)